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8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정춘생 · 박은정 · 서왕진
백선희 · 김선민 · 김 윤
임미애 · 최혁진 · 신장식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

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누구든지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성별 편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